**온라인식별서비스 약정서 (가비아 고객사용)**

|  |  |  |  |  |  |
| --- | --- | --- | --- | --- | --- |
| **회 사 명** |  | | | **대 표 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
| **사 업 장 주 소** | ( - ) | | | | |
| **이 용 부 서** |  | | | **이용담당자** |  |
| **전화번호/핸드폰** | **/** | | | **담당자 이메일** |  |
| **이 용 목 적** |  | | | **기업형태** | 개인( ), 일반( ) |
| **입금계좌** | 816 - 25 - 0036 - 195 [국민은행은행, 예금주: 나이스신용평가정보㈜] | | | | |
| **요금제 선택**  **(부가세 별도)** | 본인확인( ) | 상품선택 | (1, 6, 12개월) 대형 월 200,000원 / 4,000건 / 초과 건당47원  (1, 6, 12개월) 중형 월 100,000원 / 2,000건 / 초과 건당48원  (1, 6, 12개월) 소형 월 39,000원 / 700건 / 초과 건당50원  (1, 6, 12개월) 최소형 월 9,900원 / 100건 / 초과 건당70원  \* 개월 수를 선택해 주세요. | | |
| **전산개발**  **관련사항** | URL / IP Address | | |  | |
| 전산언어 | | | JSP ( ), ASP ( ), PHP( ), 기타 ( ) | |
| 오픈 희망일 | | | 년 월 일 | |
| 개발담당자 | | | **회사명 / 부서명** | / |
| **직책 성명** | / |
| **연락번호/핸드폰** | / |
| **전자메일** | @ |

**상기와 같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며 첨부된 약정사항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  |  |
| --- | --- |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 보증금 무통장입금증(선납제는 보증금 면제)  **[제 출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4 (여의도동)  NICE신용평가정보 5층 E-BIZ사업본부  E-BIZ사업3실 이 은 주 대리  Tel. 02-2122-4527 Fax. 02-2122-4805 | **[신 청 자]**  **회 사 명 :**  **대표자명 : (인)**  **NICE신용정보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 |

|  |  |
| --- | --- |
| **제 1 조 (목적)** 본 약정은 “을”이 “갑”에게 “온라인식별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신의•성실의 원칙)** “갑”과 “을”은 이 약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조한다.  **제 3 조 (서비스의 정의)** ①“온라인식별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라 함은 “을”이 제공하는 개인(또는 사업자)을 식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서비스”의 종류는 안심체크(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기타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를 입력 받아 입력한 정보와 NICE가 보유한 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 본인확인(휴대폰,카드,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여부 확인), 나이스아이핀(온라인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본인확인 제공), 계좌확인(고객이 입력한 계좌정보에 대한 일치 여부 확인)서비스, 개인실명확인(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의 일치 여부 확인) 등이 있다.  **제 4 조 (제공정보의 내용)** “갑”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은 “서비스”에서 전송하는 확인 값으로 한다.  **제 5 조 (약정 기간 및 갱신)** 본 약정의 적용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하되, 약정만기일 1개월 전에 “갑”과 “을”이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갱신거절 통지가 없는 경우 동일조건으로 1년씩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 6 조 (정보이용 방법 및 시간)** ①“을”은 인터넷방식을 통하여 서비스를 “갑”에게 제공한다. ②“을”은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은 24시간 서비스 이용에 따라서 정기점검(매월 3차주 일요일 22시부터 익일 04시까지)이외에 일시적인 정보제공 중단이나 야간 및 휴일의 장애복구지연 가능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을”은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선을 다해 신속히 복구한다. ④“갑”과”을”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7 조 (수수료 및 보증금)** ①”갑”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약정서상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②월간제의 경우 3개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약정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선지급하며, 선지급한 보증금은 해지 시 환불한다. ③“을”은 원가변동, 제도변경, 서비스 변경, “갑”과 가비아간 또는 “을”과 가비아간의 계약관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약정기간 중이라도 정보이용수수료의 변경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정보이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제 8 조 (수수료 청구 및 납입)** ①월간제의 경우 ”을”은 “갑”의 정보이용 익월 15일까지 “갑”의 정보이용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수수료를 청구월 말일까지 “을”에게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 ②선납제의 경우 “갑”은 정보이용수수료를 신청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을”의 계좌로 입금하고, “을”은 입금월 말일까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발송한다. ③“을”은 정보이용수수료의 원활한 수납을 위하여 “갑”에게 CMS 출금이체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 9 조 (판단의 독자성)** “을”은 제3의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음에 따라서 제공한 정보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갑”은 그 업무취급에 있어 신용공여나 회원가입여부 등의 의사결정을 독자적으로 한다.  **제 10 조 (의무)** ①”갑”과 ”을”은 본 약정의 이행과 관련한 업무수행 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갑”과”을”은 서비스의 재판매, 업무목적 외 사용, 외부침입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서비스의 제공•이용과 관련하여 각각 서비스 및 실명정보가 오남용 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 11 조 (약정의 해지)** ①본 계약의 일방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관련비용은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미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 선납제 서비스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한하여 계약해지시 기 사용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1. 을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갑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3. 천재지변, 사변, 영업허가 취소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④제3항의 환급액은 월 월 정상요금 (10만원)을 기초로 산정한 기 이용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제3항의 2에 한해서만 중도해지 수수료로 제7조 선납금액의 10%를 추가 부과한다.  **제 12 조 (합의 관할)** 이 약정과 관련된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3 조 (손해배상)** 본 약정의 일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약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관련법령이나 규정의 변경, 서비스의 최신성과 정확성 유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4 조 (약정서 보관 및 효력)** 본 약정은 “갑”과 “을”의 대표자가 기명날인하고 “갑”이 “을”에게 부대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며 약정서에 기명 날인한 날부터 약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20 년 월 일  **[갑] NICE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3  대표이사 이 장 훈 (인)  **[을] NICE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4  대표이사 심 의 영 (인) |

**CMS 출금이체 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기관 및 이용서비스** | |  | |  | |  |
| 신청업체명 | |  | | | | |
| 사업자번호 | |  | 대표자 | |  | |
| 담당자 | |  | 담당자 연락처 | |  | |
| **▶출금이체 신청내역** | |  | |  | |  |
| 출금은행 | | 은행 | 계좌번호 | |  | |
| 예금주명 | |  | 예금주 주민번호 | | (법인은 사업자번호 기재) | |
| 이체개시 년월 | | 년 월 | 출금일 | | □ 매월 25일 □ 매월 말일 | |
| 아래 약관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서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출금이체거래를 신청합니다.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서 ◇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 합니다.  년 201 월 일  신청인 (인) | | | | | | |
| 첨부서류 | 통장 사본 1부 | | | | | |
|  | | | | | | |
| **CMS 출금이체 약관**  1.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 주십시오.  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  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4.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출금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5.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6. 출금이체신청(신규, 해지)은 해당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출금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8.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9.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 | | | | | |